|  |  |  |
| --- | --- | --- |
| **2.3.4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财建[2007]371号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건설부, 해양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에너지공급압력을 진일보 완화시키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의 요구에 따라 중앙재정에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을 설정하였다.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당 청은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붙임: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2006년 5월 30일**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제1장 총 칙****제1조** 재생에너지추진 특별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사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이 방법이 󰡒재생에너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 법』이 정한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자원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비 화학석유에너지를 말한다.이 방법이 󰡒재생에너지추진 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함)이라 함은 법에 따라 국무원 재정부서가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사용하는 특별자금을 말한다.특별자금은 중앙재정예산으로 배정한다.**제3조** 특별자금은 하기 각호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 시범공사(2) 농촌, 목축구역 생활용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이용프로젝트(3) 오지와 도서의 독립 재생에너지발전 시스템건설(4) 재생에너지자원의 답사, 평가 및 관련정보시스템 구축(5)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추진.**제4조** 특별자금 배정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1) 중점을 내세우고 일반을 돌보는 원칙(2) 경쟁을 권장하고 우수한 자를 지원하는 원칙(3)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제2장 지원 중점** **제5조** 특별자금은 중점적으로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좋은 석유대체프로젝트, 건축물의 열 공급, 난방, 냉방 프로젝트, 전력생산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지원한다. **제6조** 석유대체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서 중점은 바이오 에틸알코올연료, 바이오 디젤유 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바이오 에틸알코올연료라 함은 사탕수수, 카사바, 사탕수수(甜高梁) 등으로 제조한 연료 에틸알코올을 말한다.바이오 디젤유라 함은 유료작물, 유료임목의 과실, 유료수생식물 등을 원료로 추출한 액체연료를 말한다. **제7조** 건축물의 열 공급, 난방, 냉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서는 건축물의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응용보급을 중점으로 지원한다.**제8조** 재생에너지발전에서는 풍력발전, 태양에너지발전, 해양에너지발전의 보급응용을 중점으로 지원한다.**제9조** 국무원 재정부서는 전국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기획에 근거하여 기타 지원중점을 확정한다.**제3장 신청과 심사인가****제10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와 전국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기획에 근거하여 국무원 재생에너지 계통관리부서(이하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라 함)가 주관하고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간 특별자금 신청가이드를 편성하여 공포한다.**제11조** 특별자금 사용을 신청하는 단위나 개인은 국가 연간특별자금 신청가이드에 근거하여 소재지 재생에너지 계통관리부서(이하 지방 계통관리부서라 한다.)와 지방재정부서에 각각 신청한다.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의 국가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863󰡓, 󰡒973󰡓 등 국가 과학기술계획(기금)을 통하여 신청한다. 농촌 메탄가스 등 농업분야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프로젝트는 이미 자금루트가 있는 경우 현행 자금루트를 통해 자금지원을 신청한다. 상술한 2종 프로젝트는 특별자금을 중복신청하지 못한다.**제12조** 지방 계통관리부서가 주관하고 동급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직전상급을 통해 국무원 계통관리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국무원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신고한 상황에 따라 관련기구에 신고한 자료의 평가를 위임하거나 전문가를 동원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금을 사용하여 중점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한 공개 입찰하여야 한다. 입찰은 국무원 계통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입찰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제14조**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전문가의 심의와 입찰결과에 근거하여 재정배정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국무원 재정부서는 재생에너지 추진계획과 특별자금 연도배정한도액에 근거하여 심사확인하고 자금예산을 인가한다.**제15조** 각급 재정부서는 규정절차에 따라 특별자금 조달수속을 함으로써 제때에 특별자금 전액을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에게 조달하여야 한다.**제16조** 집행과정에 특수원인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은 신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4장 재무관리****제17조** 특별자금 사용방식은 무상지원과 저리대부를 포함한다.(1) 무상지원방식.무상지원방식은 주로 이윤이 적고 공익성이 강한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표준제정 등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외에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은 무상지원자금액과 상당한 자유 부대자금을 제출하여야 한다.(2) 저리대부방식.저리대부방식은 주로 국가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지도목록에 속하고 대부조건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은행대부금이 이미 불입되었고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이 이자를 지불한 조건에서만 저리대부금을 배정할 수 있다.저리자금은 은행대부금이 불입되었고 계약에 의하여 이자율이 약정된 상황에서 실지 지불한 이자액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이자할인 연한은 1~3년이고 연 이자할인율은 3%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제18조** 국가가 조달한 특별자금을 취득한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제19조** 무상지원자금을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하기 범위에서 특별자금을 지불한다. (1) 인건비.인건비라 함은 직접 프로젝트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노임보수를 말한다.프로젝트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소속단위가 사업비 재정조달을 받는 경우 인건비는 소속단위가 국가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전액지불하고 프로젝트경비에서 중복지불하지 못한다. (2) 설비비용.설비비용이란 구매제품실시에 필요한 전문설비, 계기 등 비용을 말한다.이미 기타자금을 배정하여 설비를 구입하였거나 기유의 설비와 계기가 프로젝트작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프로젝트경비에서 중복지불하지 못한다.(3) 에너지 재료비용.에너지 재료비용이라 함은 프로젝트 실시과정에 직접 소모하는 원자재, 연료 및 동력, 저가소모품 등 지출을 말한다.(4) 임차료.임차료라 함은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장소, 설비, 계기 등의 임차료를 말한다.(5) 감정, 인수비용.감정, 인수비용이라 함은 프로젝트 실시과정에 필수적인 실험, 감정, 인수비용을 말한다.(6) 프로젝트 실시과정에 필요한 기타비용의 지출.이상 각종 비용 중 국가의 지불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제5장 고과와 감독****제20조** 국무원 재정부서와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수시로 검사한다.**제21조** 프로젝트 실시 단위나 개인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자금의 구체집행상황을 직전상급을 통하여 국무원 계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특별자금의 사용상황을 심사확인하고 연간특별자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 전까지 그 전연도 결산서를 국무원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제22조** 특별자금은 프로젝트 전용자금으로서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차단억류하거 유용하지 못한다.거짓보고나 시칭수단으로 특별자금을 사취, 차단억류, 유용한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는 외에 이미 조달한 특별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중앙재정에 불입한다.**제6장 부 칙****제23조**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이 방법에 의거하고 국무원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관련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한다.**제24조** 이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해석한다.**제25조** 이 방법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财政部关于印发《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的通知**财建[2006]371号发展改革委、国土资源部、建设部、海洋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为进一步缓解能源供应压力，促进可再生能源的开发利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的要求，中央财政设立了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为了规范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的管理，我们制定了《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现予印发，请遵照执行。　　附件：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 　　二0 0 六年五月三十日**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对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的管理，提高资金使用效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等相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可再生能源”是指《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规定的风能、太阳能、水能、生物质能、地热能、海洋能等非化石能源。　　本办法所称“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以下简称发展专项资金）是指由国务院财政部门依法设立的，用于支持可再生能源开发利用的专项资金。　　发展专项资金通过中央财政预算安排。　**第三条** 发展专项资金用于资助以下活动： 　　（一）可再生能源开发利用的科学技术研究、标准制定和示范工程； 　　（二）农村、牧区生活用能的可再生能源利用项目； 　　（三）偏远地区和海岛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建设；　　（四）可再生能源的资源勘查、评价和相关信息系统建设；　　（五）促进可再生能源开发利用设备的本地化生产。　**第四条** 发展专项资金安排应遵循的原则：　　（一）突出重点、兼顾一般；　　（二）鼓励竞争、择优扶持；　　（三）公开、公平、公正。**第二章 扶持重点**　**第五条** 发展专项资金重点扶持潜力大、前景好的石油替代，建筑物供热、采暖和制冷，以及发电等可再生能源的开发利用。　　**第六条**  石油替代可再生能源开发利用，重点是扶持发展生物乙醇燃料、生物柴油等。　　生物乙醇燃料是指用甘蔗、木薯、甜高梁等制取的燃料乙醇。　　生物柴油是指用油料作物、油料林木果实、油料水生植物等为原料制取的液体燃料。　　**第七条** 建筑物供热、采暖和制冷可再生能源开发利用，重点扶持太阳能、地热能等在建筑物中的推广应用。　　**第八条** 可再生能源发电重点扶持风能、太阳能、海洋能等发电的推广应用。　　**第九条**  国务院财政部门根据全国可再生能源开发利用规划确定的其他扶持重点。**第三章 申报及审批**　**第十条** 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要以及全国可再生能源开发利用规划，国务院可再生能源归口管理部门（以下简称国务院归口管理部门）负责会同国务院财政部门组织专家编制、发布年度专项资金申报指南。　　**第十一条** 申请使用发展专项资金的单位或者个人，根据国家年度专项资金申报指南，向所在地可再生能源归口管理部门（以下简称地方归口管理部门）和地方财政部门分别进行申报。　　可再生能源开发利用的科学技术研究项目，需要申请国家资金扶持的，通过“863”、“973”等国家科技计划（基金）渠道申请；农村沼气等农业领域的可再生能源开发利用项目，现已有资金渠道的，通过现行渠道申请支持。上述两类项目，不得在发展专项资金中重复申请。　**第十二条** 地方归口管理部门负责会同同级地方财政部门逐级向国务院归口管理部门和国务院财政部门进行申报。　**第十三条** 国务院归口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根据申报情况，委托相关机构对申报材料进行评估或者组织专家进行评审。　　对使用发展专项资金进行重点支持的项目，凡符合招标条件的，须实行公开招标。招标工作由国务院归口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参照国家招投标管理的有关规定组织实施。　　**第十四条** 根据专家评审意见、招标结果，国务院归口管理部门负责提出资金安排建议，报送国务院财政部门审批。　　国务院财政部门根据可再生能源发展规划和发展专项资金年度预算安排额度审核、批复资金预算。　**第十五条** 各级财政部门按照规定程序办理发展专项资金划拨手续，及时、足额将专项资金拨付给项目承担单位或者个人。　**第十六条** 在执行过程中因特殊原因需要变更或者撤销的，项目承担单位或者个人按照申报程序报批。**第四章 财务管理**　**第十七条** 发展专项资金的使用方式包括：无偿资助和贷款贴息。　　（一）无偿资助方式。　　无偿资助方式主要用于盈利性弱、公益性强的项目。除标准制订等需由国家全额资助外，项目承担单位或者个人须提供与无偿资助资金等额以上的自有配套资金。　　（二）贷款贴息方式。　　贷款贴息方式主要用于列入国家可再生能源产业发展指导目录、符合信贷条件的可再生能源开发利用项目。在银行贷款到位、项目承担单位或者个人已支付利息的前提下，才可以安排贴息资金。　　贴息资金根据实际到位银行贷款、合同约定利息率以及实际支付利息数额确定，贴息年限为1-3年，年贴息率最高不超过3%。　　**第十八条** 项目承担单位或者个人获得国家拨付的发展专项资金后，应当按国家有关规定进行财务处理。　　**第十九条** 获得无偿资助的单位和个人，在以下范围内开支发展专项资金：　　（一）人工费。　　人工费是指直接从事项目工作人员的工资性费用。　　项目工作人员所在单位有财政事业费拨款的，人工费由所在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从事业费中足额支付给项目工作人员，并不得在项目经费中重复列支。　　（二）设备费。　　设备费是指购置项目实施所必需的专用设备、仪器等的费用。　　设备费已由其他资金安排购置或者现有设备仪器能够满足项目工作需要的，不得在项目经费中重复列支。　　（三）能源材料费。　　能源材料费是指项目实施过程中直接耗用的原材料、燃料及动力、低值易耗品等支出。　　（四）租赁费。　　租赁费是指租赁项目实施所必需的场地、设备、仪器等的费用。　　（五）鉴定验收费。　　鉴定验收费是指项目实施过程中所必需的试验、鉴定、验收费用。　　（六）项目实施过程中其他必要的费用支出。　　以上各项费用，国家有开支标准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第五章 考核与监督**　　**第二十条** 国务院财政部门和国务院归口管理部门对发展专项资金的使用情况进行不定期检查。**第二十一条** 项目承担单位或者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将发展专项资金具体执行情况逐级上报国务院归口管理部门。　　国务院归口管理部门对发展专项资金使用情况进行审核，编报年度发展专项资金决算，并在每年3月底前将上年度决算报国务院财政部门审批。　**第二十二条** 发展专项资金专款专用，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截留、挪用。　　对以虚报、冒领等手段骗取、截留、挪用发展专项资金的，除按国家有关规定给予行政处罚外，必须将已经拨付的发展专项资金全额收回上缴中央财政。**第六章 附 则**　　**第二十三条** 国务院归口管理部门依据本办法会同国务院财政部门制定有关具体管理办法。　　**第二十四条**  本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负责解释。**第二十五条**  本办法自2006年5月30日起施行。 |